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배포일시	2018. 7. 31(화) / 총4매(본문2매)
담당 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 과장 신윤근, 사무관 김선욱 • ☎ (044) 201-3820
보도일시		2018. 7. 31(화) 15:00이후 보도가능합니다.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이하 ‘차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됨에 따라,
 -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법 영역 내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정착육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붙임 : (참고) ‘차차’서비스 불법여부 판단 및 사유

< 보도내용 (주간동아, 7.27) >

◆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
- 지난 10월에 서비스를 개시, 현재 강남일대에서 67대 운영 중이며 향후 용산·성동·광진구 일대로 확장해 100대 운영 예정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김선욱 사무관(☎ 044-201-38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차차' 서비스 관련 검토 결과, '차차' 드라이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주)하이렌터카 및 (주)차차크리에이션이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차차' 드라이버 : (주)하이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장기임차하고, 승객(단기 임차인) 운송 시 대리운전 기사가 되는 주체

(주)하이렌터카 : 차차 드라이버에게 렌터카를 장기대여하고, 승객 탑승 시 승객과 명목상의 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주)차차크리에이션 : 승객-(주)하이렌터카 간 명목상 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주체

① '차차' 드라이버의 여객법 제34조 제1항 위반 사유

- 드라이버의 수익은 대리운전 자체에 대한 대가에 국한되지 않고 라이더 유치를 위한 구역 내 배회 등 일종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차량을 대여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 사업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 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그 실질이 대여행위가 아닌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차차'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대여할 라이더를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여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은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② (주)하이렌터카·(주)차차크리에이션의 여객법 제34조 제3항 위반 사유

- '차차' 드라이버의 라이더 운송행위가 여객법 제34조 제1항 상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한, 당초부터 (주)하이렌터카와 드라이버 간의 장기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장기임대차 계약과 달리 드라이버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하이렌터카가 수취하는 명목상의 차량 장기대여료에는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라이더가 이동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출발지-목적지 간 유사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며, 해당 요금의 일정 부분이 (주)하이렌터카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하이렌터카는 여객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에 해당합니다.
 - 또한, (주)하이렌터카와 드라이버, 라이더 간의 일련의 계약이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한 (주)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여객법 제3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임차인이 주취·과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할 때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일 것이나, 법 문언상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유추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확장해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차크리에이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